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21
----------	-------

발의연월일 : 2025. 12. 17.

발의자 : 한병도 · 전용기 · 양부남

박상혁 · 홍기원 · 이광희

김승원 · 한민수 · 진선미

진성준 · 채현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 · 보호 및 복원과 생물다양성 향상을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계획수립 · 시행 · 유지관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 · 시행하는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의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해당 사업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복원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4제1항 및 제7항).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4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수립”을 “수립과 주민의견의 수렴”으로 한다.

이 경우 미리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열어 해당 사업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